

<p>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종식)</p> <p>□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시유재산변경계획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1.6.9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2호로 2001.6.12 우리 위원회에 회부 ○ 동 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,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 ○ 주요 내용은 토지 3필지 8,357.8m²(2,532.66평)과 건물 557.0m²(168.78평) 등 총 3건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내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·합병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중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로 결정되어 있는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,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업체의 차고지로 임대코자 하는 것임. <p>□주요 사안별 의견</p> <p>첫째, 동 계획안의 제출시기와 소요예산에 대한 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○ 이는 지난 2월 제124회 임시회의 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계획안이 수립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 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또 다시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되며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 ○ 또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소요예산은 128억 2천 4백만원이 예상되나 과연 어떠한 예산으로 매입할 것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는 추경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	<p>둘째,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제2기 지하철의 완전개통 등 버스이용 승객의 절대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따라서 서비스 또한 버스승객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버스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의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임. ○ 따라서 경영 부실로 인한 서비스 불량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,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철과의 연계노선 등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개편의 기반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편리한,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 <p>끝으로 형평성에 대한 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계획안은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됨. ○ 다만 동 계획안보다 더 절박하고 어려운 업체는 없는 것인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이 수립되었는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예상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돌아가 불평불만 등 원성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 <p>5. 질의 및 답변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략 <p>6. 토론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략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 11명, 재석 11명, 전원일치)</p> <p>8. 소수의견 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.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</p> <p>2001년 예산에 편성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2,508억원을 '00말 현재 서울시 전체부채의 71.0%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</p>
---	--